

동해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1-14 호

# - 2021년 제1회 동해시 지방공무원 -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 제1회 동해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1. 8. 17.

**동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인원	비 고
9급	시설	일반토목	4명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선)	1명	

## 2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 ①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거주지 및 자격증 제한 등 자격요건 심사
- (2차)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 1형(1·2차 병합실시)

구 분	시험과목 (3과목 / 1·2차 병합)	시험시간	비 고
시설9급 (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10:00 ~ 11:00 (60분)	시험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합니다.
의료기술9급 (방사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3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2] 시험일정

공 고 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2021. 8. 17.(화) ~ 8. 27.(금) [11일간]	2021. 8. 25.(수) ~ 8. 27.(금) [3일간]	서 류	-	-	2021. 8. 31.(화)
		필 기	2021. 8. 31.(화)	2021. 9. 4.(토)	2021. 9. 7.(화)
		면 접	2021. 9. 7.(화)	추후 별도 공지	추후 별도 공지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 관련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시험정보 란에 공고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거주지 제한** : 2021년 제1회 동해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하여야 함

① 공통	② 직렬별	
	시설(일반토목)	의료기술(방사선)
공고일 전일까지 동해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 (月단위로 36개월 이상)인 사람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해시 또는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 **자격증 제한 (당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시설-일반토목)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의료기술-방사선) 방사선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직렬	직류	대상 자격(면허)증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선)	방사선사	

-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8. 25.(수) ~ 8. 27.(금) / 3일간
- 원서교부 : 「동해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 인사정보 / 시험정보에서 다운
- 원서접수 :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033-530-2055)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시~18시) 방문 또는 인터넷(e-메일)
  - 인터넷(e-메일) 접수 : kty8722@korea.kr
  - ※ 응시수수료 등 접수확인을 위해 응시원서 제출 후, 반드시 접수처에 확인
  - 방문접수 :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 (본관 2층)
- 제출서류 (별첨 서식 참고)
  -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 날인 / 동해시청 1층 민원과 수입증지 발급 또는 접수시 담당자 문의
  -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③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에 따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 가급적 전자문서(한글)로 작성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⑥ 자격증 (필수자격증은 응시자 전원, 그 외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 ⑦ 관련분야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채용예정분야에 한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연락처 포함)
    -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시에는 이력서 상에 기재한 경력이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음
    - 기업·기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자에 대한 업무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업무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별도 제출

## 5 가산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적용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인원 4명 이상인 시설직에만 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은 선발예정인원 30% 초과할 수 없음
의사상자 등	선발인원이 9명 이하 해당사항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적용대상 등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규를 적용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 033-530-2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